

2011. 12. 14. (수) 10:00 ~

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

〔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〕
〔 심 사 보 고 서 〕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임채근

<의안번호 제2011 - 82호>

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11. 11. 16.(수)
- 제출자: 거창군수
- 회부일자: 2011. 11. 17.(목)
- 상정·의결일자: 2011. 12. 12. (제4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근거 및 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함.

3. 기금조성 현황(총괄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1년도말 현재액	2012년도 조성계획			2012년도말 현재액
		수입	지출	증감	
중소기업육성기금	4,004	632	0	632	4,636
옥외광고정비기금	23	23	0	23	46
재난관리기금	816	753	910	△157	659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<경제과소관>

【 중소기업육성기금: 49P 】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 및 「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의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.
- 2012년도 기금운용(조성)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400만 원과 출연금 5억 원 및 이자수입 1억 3,200만 원으로 총 46억 3,600만 원 조성계획이며, 지출계획은 없음.

<도시건축과 소관>

【 옥외광고물정비기금: 54P 】

-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 및 「거창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0년 3월 29일 조례 제1967호로 제정되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기금 2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.
- 2012년도 기금운용(조성)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,300만 원과 출연금 2,000만 원 및 이자수입·기타수입 300만 원으로 총 4,600만 원 조성 계획이며, 지출계획은 없음.

<재난관리과소관>

【 재난관리기금: 58P 】
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, 신속한 복구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 및 「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」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2012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.

- 2012년도 기금운용(구성)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억 1,600만 원과 출연금 2억 5,000만 원, 보조금 및 이자수입 5억 300만 원으로 총 15억 6,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1,000만 원과 죽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8억 원, 월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금 1억 원으로 총 9억 1,0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말 잔액은 6억 5,900만 원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수정내역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변동조서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